

인천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18가단2130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의 소송수계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이웅

변론 종결 2021. 5. 18.

판결 선고 2021. 6. 22.

주 문

1. 87,176,788원 범위내에서,
가.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채권가액 65,000,000원)에 관하여 2017. 7.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A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채권가액 50,001,270원)에 관하여 2017. 7.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176,7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의 대출약정 및 A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5. 11. 11. D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 자금, 이율 연 3.81%(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상환은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A은 120,000,000원의 한도에서 위 대출약정상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D,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D에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D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2018. 3. 5. 기준 대출원금 83,200,000원, 대지급금 526,591원, 이자 1,471,746원, 연체이자 1,978,451원 합계 87,176,788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다. D, A의 재산처분행위

- 1) A은 2017. 7.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일부 37,600,000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7.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A의 F에 대한 50,001,27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하여 주었다.

3)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65,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E에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하여 주었다(이하 위 2), 3)항 채권양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D, A의 채무초과

2017. 7. 4.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65,000,000원),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50,001,270원)이 있었던 반면, D, A은 원고에 대한 87,176,788원의 채무 외에도 피고에 대한 146,493,199원의 물품대금 채무와 아래 <표> 기재 채무(원금 기준)가 있었다.

<표>

1	G 주식회사	2000. 3. 2.	7,938,056	A	
2	주식회사 H	2001. 8. 12.	4,921,285	A	
3	중소기업은행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5,990,630원의 신용카드 채무는 취급일자가 '2017. 7. 13.'으로 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2014. 6. 13.	24,999,963	A	
4	중소기업은행	2013. 6. 7.	4,702,940	D	A
5	주식회사 I	2015. 2. 23.	17,000,000	A	
6	주식회사 I	2015. 9. 10.	19,595,102	D	A
7	신용보증기금	2017. 11. 14.2) 대위변제일이 2017. 11. 14.이나, 신용보증약정은 처분행위 이전으로 보인다(보증상대처 등으로 보아 순번6 채무의 신용보증채무로 보임).	206,421,573	D	A
8	주식회사 J	2017. 4.	37,266,834	D	A
합계	322,845,253				

마. A의 개인회생개시결정 등

A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2017개회21992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2019. 9. 23. 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행하여진 2017. 7. 4. 이전에 체결, 실행된 것임이 명백하고, 그 후 원고의 가압류 등으로 대지급금이 발생한 이상 위 대출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일응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 A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170,001,270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120,000,000원 + 이 사건 대여금 채권 50,001,270원), D의 적극재산은 65,000,000원(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불과한 반면, A의 소극재산은 합계 556,515,240원(= 원고에 대한 87,176,788원의 채무 + 피고에 대한 146,493,199원의 채무 + 기타 채권자에 대한 322,845,253원의 채무), D의 소극재산은 501,655,935원(위 A의 소극재산에서 <표> 순번 1, 2, 3, 5 기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있었는바, D,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는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일한 시기와 기회에 유일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A의 행위와 D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A, D는 위 각 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A,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D와 장기간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에 있었고, A은 D의 경영과 사업상 이해관계를 동일시하여 왔는바, 피고가 자재를 공급하고 수시로 변제받아 온 점, D는 2017. 7. 4. 이전에도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여 왔고 사업장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점, D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적 품목인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대금지급을 대물변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D의 신용상태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D, A으로부터 정당한 채권자로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D 사이에 2017. 4. 28. 이후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가 그 이전에 정상적인 결제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의 취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각 매매 및 채권양도계약을 일괄하여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회복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7. 7. 20. 주식회사 K 앞으로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92,88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고는 E로부터 6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매매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이상 일부는 가액배상, 일부는 원물반환을 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확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87,176,78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20,000,000원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3)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9,880,000원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50,001,270원,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6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의 합계는 135,121,270원[= 20,120,000원(= 120,000,000원 - 99,880,000원) + 50,001,270원 + 65,000,00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87,176,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87,176,78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87,176,7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해인

별지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5,990,630원의 신용카드 채무는 취급일자가 '2017. 7. 13.'으로 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2) 대위변제일이 2017. 11. 14.이나, 신용보증약정은 처분행위 이전으로 보인다(보증상대처 등으로

보아 순번6 채무의 신용보증채무로 보임).

- 3)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1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99,880,000원인데, A과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 37,600,000원의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12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다만,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의 2021. 5.경 L시세 일반평균가는 118,500,000원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엄밀하게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 4)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